

'97 전파통신 총회¹⁾ (RA-97)

결과 보고



이 흥림
한국통신
제네바사무소 파견

1. 회의 개요

- 회의 기간 : '97. 10. 20 - 10. 24
- 회의 장소 : ITU 본부
- 회의 참가자 :
 - 87개국 정부 및 민간회원 대표, 14개 국제기구 대표 520명
 - 한국측 참가 대표단 명단

기관	성명	비고
정보통신부	이 근협	주파수 과장 (수석대표)
	강 상선	전파기획과
TTA	장 명국	표준화국장
	김 성권	부장
한국통신	조 유현	제네바사무소 소장
	이 흥립	제네바사무소 부장
ETRI	유 기석	선임연구원
SKT	박 종봉	과장
신세기	박 종원	과장
RAPA	구 본구	실장

- 주요 의제

- BR 국장 및 각 연구반 활동 보고
- 총회에 상정된 ITU-R 권고안 승인

1) '97 전파통신 총회(RA-97) : 구 CCIR 총회로 '92년 개최된 추가전권위원회(제네바 개최)에서 ITU 현장, 협약의 개정을 통해 RA(Radiocommunication Assembly)로 개칭됨(매2년마다 개최). ITU 현장(CS), 협약(CV)상에 명시된 RA의 역할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세계 전파통신회의(WRC)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고 WRC로 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응답 (현장 13조)
- 자체절차를 통해 결정되거나 전권위원회, 이사회, 무선규칙 위원회 등에서 송부된 사안과 연구과제에 대한 권고안 취급. 연구반(Study Group)의 보고서 및 권고안 검토와 연구과제의 승인 및 우선순위, 긴급도 등 결정. 연구반의 유지여부 결정 및 연구과제 할당 (협약 8조)

- 다음 회기 연구과제 승인
- 결의안 및 의견 채택
- 차기 회기 연구반 구성 및 의장단 선출 등

2. 개회 및 회의 조직 구성

가. 개회

- BR 국장인 Mr. R.W. Jones가 '97 전파통신총회의 개회를 선언함

나. 총회 의장단 선출

- 의장 : Mr. E.Hauck (Switzerland)
- 부의장 : (5명)
Mr. A.A. Al-Darrab (Saudi Arabia)
Mr. D. Angoula (Cameroon)
Mr. B. Gracie (Canada)
Mrs. A. Karwowska-Lamparska (Poland)
Mr. B. Zhou (China)

다. 위원회 구성 및 의장단 선출

- COMMITTEE 1(운영위원회)
: 총회 및 타 위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
- COMMITTEE 2(예산위원회)
• 의장 : Mr. G.Kithinji (Kenya)
• 부의장 : Mr. S.Kobayashi (Japan)
- COMMITTEE 3(편집위원회)
• 의장 : Mr. L. Bourgeat (France)
• 부의장 : Mr. P. Garcia Barquero (Spain)
- COMMITTEE 4(연구반구조 및 작업프로그램)
• 의장 : Mr. J.M.P. Fortes (Brazil)
• 부의장 : Mr. M.M Alawa (Syria)
 Mr. D.Cole (Australia)
- COMMITTEE 5(연구반 작업방법)

- 의장 : Mr. L.Barclay (United Kingdom)
- 부의장: Mr. K.Nebbia (U.S)
 Mr. A.Pavliouk (Russia)

3. 회의결과 요약

가. BR국장 및 각 연구반 보고

- BR국장이 제2차 전파통신총회(1995년) 이후의 전파통신 분야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하였으며 BR국장의 보고서가 승인됨.
- 관련문서 : RA97/PLEN 및 Corr.1
- BR국장이 '95년 전파통신총회와 '97년 전파통신회의 사이의 2년간 연구회기동안 승인된 ITU-R 권고에 대해 문서 RA97/PLEN /41로 설명하였으며, WRC-97에 대한 CPM 보고서내에 포함된 ITU-R 권고에 대해 문서 RA/PLEN/39로 설명하였음.
- SG3 의장이 이전 SG5와 SG6의 통합이후의 SG3의 활동 및 산하 WPs의 활동에 대해 Doc. 3/1001로 보고하였으며, SG3에서 승인된 신규 및 개정 권고의 목록과 SG3에 할당된 연구과제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음.
- SG10 의장이 Doc. 10/1001에 포함되어 있는 SG10 및 산하의 3개의 WPs, 2개의 JWPs 및 3개의 TGs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IEC 및 ISO와의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음.
- SG11의 활동사항에 대해 SG11 의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디지털 TV 방송의 도입에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보고하였음. 관련내용은 Doc. 11/1001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 SG7의장이 금번 연구회기내 진행된 활동 사항에 대해 Doc. 7/1001 문서로서 보고하

- 였으며, 활동 결과에 의한 18건의 신규 및 개정 권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고 총회에서 승인하였음.
- SG1 의장이 Doc. 1/1001로서 SG1의 전체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현재 진행되는 연구사항 및 결과에 대해 1/1002, 1/1003 및 1/1004로서 보고하였음.
 - SG9 의장이 연구회기내의 활동 결과에 대해 간략 설명하였으며, 1,452~1,492MHz 대역에서의 BSS와 고정업무간의 주파수 공유 문제에 대한 신규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였음.
 - CCV의장이 전반적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FPLMTS(IMT-2000)에 관련한 용어 및 표준 주파수 및 표준시보에 대한 용어 표준화 작업내용을 설명하였음.
 - SG4 의장이 Doc. 4/1001 등으로 활동사항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음. SNG 관련하여 핸드북이 작성 완료되었으며, 금번회기에 총 19개의 권고가 준비되었음을 설명함.
 - SG8 의장이 SG8의 전반적인 활동 내역을 보고하였고, 특히 IMT-2000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향후 FPLMTS를 IMT-2000으로 용어 표기할 것을 요청함.
 - 규제 및 절차특별위원회(SCRPM)에서는 타 ITU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규제 및 절차 문제와 '97교토회의에서 결정된 결의

18(Resolution 18)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BR국장에 보고하였음. 본 위원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 주관청으로부터 기고가 매우 빈약한 것이 문제이며, 이에 대해 이번 총회에서 조치가 필요함을 SCRPM의장이 설명하였음.

나. 총회에 상정된 권고 승인

- 승인 권고 : 신규 제정 55건, 개정 43건²⁾
- 주요 승인 권고
 - Framework for Services supported on IMT-2000³⁾
 - Framework for Modularity and Radio Commonality within IMT-2000⁴⁾
 - Evolution of Land Mobile Systems Towards IMT-2000⁵⁾
 - Video coding for digital terrestrial TV broadcasting⁶⁾
- 승인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권고
 - “Threshold levels to determine the need to coordinate between the broadcasting-satellite service(sound) in the geostationary-satellite orbit for space-to-earth transmissions and the fixed service in the band 1,452- 1,492 MHz” (Doc 9/ 1005 (Rev.1), Question ITU-R 111/9)⁷⁾
 - “Methods for determining coordination

2) 승인권고 목록은 <국제회의 참가보고서(TTA, 1997. 12.) 부록 2>참고

3) ITU-R 권고 M.816-1 ('97.10)

4) ITU-R 권고 M.1311 ('97.10)

5) ITU-R 권고 M.1308 ('97.10). 기존 이동통신시스템이 IMT-2000으로 진화해야 하고, 전 세계적 로밍을 위해서 단말기가 멀티밴드로 동작 가능해야 함을 규정함.

6) BT.1208-1 ('97.10). MPEC-2 비디오와 오디오 코딩방식 등을 규정하고, 유럽과 미국방식을 모두 포함 권고함.

7) WRC-92에서 broadcasting service (sound)에 대해 1,452 - 1,492 MHz의 주파수 대역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동일 대역에서의 Fixed Service 사이에 sharing criteria의 문제가 대두되었음. 본 권고안의 검토과정에서 본 권고가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지 않고, 두 서비스가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시 주파수 중복(overlap)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 승인에 대해 다수 국가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권고상에 '1,452- 1,492 MHz 대역에서의 공유 방법론(sharing methodology)'의 개발과 시스템 특성에 대한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착수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note를 추가하여 권고를 승인하였음. 더불어, 권고상의 threshold value가 임시(interim)값으로 특정 시스템에 한해 적용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라 제안 권고상의 제목에서 'system'을 'particular system'으로 변경하였음. 한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국은 마지막까지 자국의 입장을 유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승인 권고안에 이를 명시도록 하였음.

distance, in the 5GHz band, between the international standard microwave landing system(MLS) stations operating in the aeronautical radionavigation service (ARNS) and NGSO mobile satellite service(MSS) stations providing feeder uplink services" (Doc 4/1008(Rev.1), Question ITU-R 244/4)⁸⁾

다. 다음 회기 연구과제 승인

- 승인 과제: 총 451건 (신규 34건, 계속 398건)⁹⁾
 - 전파통신회의(Conference)와 관련된 과제: 연구의 시급도에 따라 C1, C2로 구분
 - 일반 연구과제: 연구의 시급도에 따라 S1, S2, S3로 구분
- 연구과제 승인시 주요 논란 사항

○논란 사항

- 해당 회의(competent Conference)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규제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의 승인 여부

○해당 과제

-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Appendix 30B plan against interference from

-
- 8) WRC-95에서 fixed satellite service(FSS)에 이때까지 항공 무선관제 서비스에 할당되어 온 5 GHz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키로 하는 결정(decision)을 채택함에 따라 조정 (coordination)문제가 대두되었음. 본 권고안의 검토과정에서 권고안 annex상의 coordination distance를 결정하는 방법이 기존 전파규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프랑스 등이 본 권고를 승인하지 말고 보다 세부 연구토록 SG 4, 8간의 joint working group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음. 최종적으로 프랑스, 영국, 남 아프리카 등이 유보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권고가 승인되었으나 승인된 권고에 주석(footnote)으로 유보입장을 표명한 국가의 주장을 명기하였음.
 - 9) 승인 과제 목록은 <국제회의 참가보고서(TTA, 1997. 12.) 부록 6> 참고.
 - 10) SG1(Spectrum Management), SG3(Radiowave Propagation), SG4(Fixed Satellite Service), SG7(Science Service), SG8(Mobile, Radiodetermination, Amateur and Related Satellite Services), SG9(Fixed Service), SG10(Broadcasting Service - Sound), SG11 (Broadcasting Service - Television)
 - 11) 본 제안의 배경 및 미국측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음
 - RA-95에서 interservice-sharing 과 compatibility에 관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담당해오던 SG2를 폐지함에 따라 SG2에서 관리해오던 권고들이 여러 SG로 이관되게 되고, SG1에서는 서비스간 공유의 일반적인 문제를 이관받게 되었음
 - 한편, 실제 interservice-sharing 문제의 취급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연구반이 관여되는 복수 서비스간의 구체적 공유문제와 과거 SG2에서 다루던 권고에 대한 관리를 SG1내의 특정 WP에 구체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SG1 WP1B에 interservice sharing 문제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토록 임무내용을 구체화 명시
 - 또한, 주파수 관리의 경제적 접근방식에 관한 사항의 연구도 그동안 이를 담당해 온 WP1B의 임무에 할당,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WP1B의 임무를 구체화하여 수정

NGSO systems (ITU-R 252/4)

- Determination of protection requirements and criteria that may allow operation of NGSO systems in the frequency bands covered by Appendices 30 and 30A (연 구반10, 11에서 공동 제안)

○결과

- 252/4의 경우는 '일부 정부가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RR상의 관련 조항(S5.441)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 과제에 대한 작업은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주석(footnote)을 달아 승인.
- 연구반 10과 11에서 공동제안한 과제에 대해서는 Plenary에서 최종 검토결과 해당 Conference에서 규제문제와 관련한 사항이 먼저 결정된 후 과제를 채택키로 함.

라. 연구반 구성 및 임무

- 구성 :
 - 종전 회기와 동일하게 8개 연구반 유지¹⁰⁾
 - 규제, 절차문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해 온 특별위원회(SC)도 현행대로 유지
- 연구반 임무 관련 논의사항

1) SG1의 임무 관련

- RA-97/PLEN/33(문서 제목: SG1의 임무 수정)을 통해 미국측에서 문제 제기¹¹⁾

- 여러 연구반이 관여되는 복수 서비스간의 구체적 공유문제와 과거 SG2에서 다루던 권고에 대한 관리를 SG1내의 특정 WP에 할당 필요
- 또한, 주파수 관리의 경제적 접근방식에 관한 사항의 연구도 SG1내의 특정 WP에 구체적으로 할당 필요

○ 결과

- 주파수의 inter-service sharing과 관련한 연구 담당에 있어서는 기존 부속서2의 문구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수정 채택 : “자신에게 할당된 inter-service sharing과 compatibility에 관련한 제한된 숫자의 구체적이고 시급한 과제의 연구 수행” (부속서: 6.)
- 주파수 관리의 경제적 접근방식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ITU-R 결의 4-1(연구반 구조)의 부속서2(SG1의 작업에 있어서의 원칙)에 ITU-R 텍스트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추가 : “(ITU) 전기 통신 개발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의 주파수 관리에 있어 경제적 접근방식에 관한 전략” (부속서: 3.의 4항)

2) SG10, SG11의 임무 관련

- RA-97/PLEN/30을 통해 미국측에서 제기
- SG10, 11의 임무가 현재의 기술단계에서 볼 때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따라서 재정의가 필요함

○ 결과

- SG10, SG11간 Joint Steering Committee에서 연구한 후 차기 RA에 상정키로 결정함

마. 결의 및 의견 채택 (채택된 결의 목록: 불임1)

- 결의(Resolution) 채택 : 신규 6건, 수정 11

건, 유지 18건, 폐기 2건 (총 35건)

- 의견(Opinion) 채택 : 신규 3건, 수정 2건, 유지 17건, 폐기 10건 (총 22건)
- 신규, 개정 결의, 의견 중 주요 내용

1) 결의 1-2. 전파통신총회 및 연구반 작업 방법론 (개정)

○ 연구과제의 삭제 (1조 7항)

- 종전 : 6년간 기고없는 경우 삭제
- 개정 : 2회 연속 전파통신총회에서 연구반 의장에 의해 기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된 경우 삭제

○ 연구반 회의에의 기고문 제출 (8조 6항)

- 종전 : 회의개최 최소 4개월 이전에 제출해야 함.
- 개정 : 회의개최 최소 3개월 이전에 제출해야 함.

○ 권고의 정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 지침 (6조 1항 : 추가)

- 권고가 특정한 하나의 무선 application에 대해 다양한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단순한 시스템 정보의 나열이 아닌) 해당 application에 적합한 기준을 사용하여 이들 시스템에 대한 평가내용을 담아야 한다.

- 권고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의견(Opinion) 승인 (1조 6항, 2조 25항, 6조 4항)

- 종전 : 결의(Resolution)의 경우와 동일하게 SG에서 채택 후 전파통신총회(RA)에서 승인
- 개정 : 의견(Opinion)의 경우는 연구반 회의에서 승인 (출간은 RA에서 함)

○ 세계 전파통신회의(WRC)에서 검토할 사항에 대한 WP, TG의 준비연구 결과의 보고 (2조 8항)

- 종전 : 관련 연구반을 통해 WRC 준비회

의(CPM)에 보고

- 개정 : 연구반 text를 CPM 보고서 초안에 통합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를 통해 WRC 준비회의(CPM)에 보고 (관련 연구반 경유 생략)

○ 권고의 승인 (10조)

- (가) 연구반회의에서의 권고 채택 생략 경우 (10.1.3 : 추가)

- 연구반회의가 전파통신총회(RA) 이전에 없는 경우로 TG나 WP가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신규 또는 개정권고를 마련 했을 경우
- 위 경우 의장은 이전 연구반회의의 결정으로 이를 전파통신총회(RA)에 바로 제출할 수 있음

(나) 연구반 회의에서 권고 채택 (10조 2항)

- 권고채택 사전조건 (10.2.1 : 추가)
 - 연구반 회의에 앞서 권고초안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되고 최소한 회의 2주 이전에 권고안 초안의 번역, 배포가 예상 될 경우
- 서신을 통한 연구반의 권고 채택절차 사용 가능 경우 (10.2.2 : 추가)
 - 연구반회의 의제에 구체적 포함이 예상되지 않았을 때
 - 권고안 초안이 연구반회의 이전에 필수언어로 마련될 기간이 부족했을 때
- 권고안에 대한 반대 처리절차 (10.2.7). C1 범주에 속하는 경우 (매우 시급하고, 차기 WRC를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의 연구)는 RA로 이관. C1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WP, TG로 반려

(다) 신규 또는 개정권고의 승인 (10조 3항)

- 기존 승인절차를 전반적으로 구체화, 명료화 함
- 연구반회의에서 권고안의 채택시 특정 대

표가 자신의 입장을 결정할 추가시간을 요청하고 1개월 이내에 공식반대를 표명 했을 경우

→ 회원국과의 협의(consultation)과정을 밟지 않고 권고안을 다음 RA에 상정

- RA에서의 권고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RAG에서 추가 연구토록 함

2) 결의2-2. CPM(WRC 준비회의) 작업방법론 (개정)

- CPM 개최시기

○ 1차 회의 : 이전 WRC 종료 다음 주. 연구반 의장/부의장 회의와 연계 개최

○ 2차 회의 : 차기 WRC에 앞서 최종보고서를 최소 6개월 이전에 출간 가능토록 이를 감안하여 시기 결정

- CPM 내용 및 보고서 준비

○ 1차 회의 내용

- 차기 및 가능한한 그 다음 WRC 준비를 위한 연구 issue 도출
- 각 issue에 대해 single group (SG, TG, WP 등)을 준비작업 책임을 맡도록 선택
- 가능한한 기존 그룹 이용. 새로운 그룹 구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

○ 보고서 준비

- 각 그룹의 산출물은 관련 연구반에 의한 공식 검토없이 CPM 최종보고서 작업에 직접 반영됨.
- CPM의장은 CPM 보고서의 근간이 될 내용(text)의 개발을 지도해 가고 연구반에서 마련된 text들의 통합을 통해 보고서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보고서 chapter별로 rapporteur를 지명할 수 있음

3) 결의38-1. 규제/절차문제(Regulatory/Procedural Matter)의 연구 (개정)

○ 규제 및 절차문제에 대한 연구를 담당할

Special Committee 구조 유지

- 이의 가동에 관한 결정은 WRC 또는 CPM 1차회의에서 결정
- WRC 또는 CPM 1차회의에 차기 WRC를 위해 SC를 가동할 만큼 충분한 양의 일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 및 과제부여 요청

4) 결의39. 불요 방출(unwanted emission).

- 전파통신 자료사전 및 지상지구국 주변의 조정지역 결정 (신규)
- 상기 관련 연구과제의 적기 수행을 위해 관련 연구반 및 각국 정부에 대해 협력 및 적극적인 참여 요청
- 결의 내용
 - SG1 TG1/5, 1/4, 1/6에서 수행중인 이들 관련 연구과제의 적기 수행을 위해 ITU-R 연구반들에 관련 연구내용 검토 및 rapporteur 지원 등 협력 요청
 - 기고 및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각국 정부의 TG 1/4, 1/5, 1/6 활동 지원 촉구

5) 전세계 지형 데이터베이스 (신규)

(World-wide databases of Terrain Height and Surface Features)

- 지형 DB의 전세계적 구축 및 이의 이용에 있어 각국의 협조 및 노력 요청
- 결의 내용
 - 30 MHZ에서 3 G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파특성(propagation) 예측의 전 세계적 방법으로 위도 및 경도에 있어 30 arc second horizontal resolution의 지형 데이터베이스 적합함.
 - 각국 정부는 상기 format으로 이용가능한 지형자료에 대해 검토하고 범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각국 정부는 이러한 지형 데이터베이스를 ITU의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함.

- 각국 정부는 지형 지도를 제작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30 arc second 또는 보다 나은 수준의 지형(terrain height and surface features)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토록 장려하여야 함.

6) 결의41. ISO, IEC와의 협력 (신규)

- 방송기술에 관한 표준개발에 있어 ISO, IEC와 ITU 전파통신부문간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추진 방향 설정

○ 결의 내용

- 상호간 조정이 바람직한 분야의 식별과 BR국장에게 자문을 위해 ISO, IEC로 하여금 SG10, 11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 초기단계에서 검토 요청 (역으로도 시행)
- BR국장과 RAG로 하여금 ITU 전파통신 부문과 ISO, IEC 사이의 협력절차의 개선에 대해 검토 및 제안토록 요청
- SG10, 11 의장에 대해 ISO, IEC의 관련 작업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진전을 공동으로 작성된 규격의 정합성 유지 및 공동 관심분야의 규격 개발에 있어 협력을 위해 검토토록 요청 등

7) 결의42. ITU-2000 그룹 권고에 대한 이사회 결정의 이행조치

- ITU-2000그룹의 권고 중 일부에 대해 '97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및 각 부문 국장들로 하여금 이행토록 지시함에 따라 이행을 위한 구체적 검토를 RAG에 지시

○ 결의 내용

- RAG는 '98. 1월 회의에서 해당 권고안의 적용과 영향에 대해 검토 실시
- RAG는 상기 검토결과를 BR국장이 '98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준비에 반영토록 자문

- 각국 정부와 민간회원에 대해 상기 권고안에 대해 서면 의견 제출 요청

8) 의견 95 : 미래에 있어 ITU-R과 ITU-T 활동에 있어 협력과 조화

- ITU-R과 ITU-T간 연구과제의 이관이나 분야 조정에 대한 노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향후 양 부문간 협력과 조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 권고¹²⁾

○ 의견 내용

- '98. 1월 개최되는 RAG와 TSAG의 joint meeting에서 양 부문간 융합 (convergence) 문제를 포함한 전기통신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 joint ITU-R,T project team 설치와 같은 구체적 조치를 고려하고 실행
- 이러한 공동 노력을 ITU 전략계획(1999-2003)에 적절히 반영

바. 의장단 선출 결과

연 구 내 용	의장 · 부의장	비고(국적)
SG1 Spectrum management	의장 R. Mayher 부의장 T. Jeacock N. Kisrawi A. Pavliouk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Syria Russia
SG3 Radiowave propagation	의장 D. G. Cole 부의장 B. Arbesser-Rastburg D. V. Rogers	Australia ESA Canada
SG4 Fixed-satellite service	의장 Y. Ito 부의장 J. M. P. Fortes V. Rawat A. G. Reed J. Sesena Navarro	Japan Brazil Canada United Kingdom Spain
SG7 Science services	의장 R. M. Taylor 부의장 G. De Jong V. Meens J. B. Whiteoak	United States Netherlands France Australia
SG8 Mobile, radiodetermination, amateur and related satellite services	의장 E. George 부의장 A. A. Al-Darrab T. Mizuike R. Swanson O. Villanyi	Germany Saudi Arabia Japan United States Hungary
SG9 Fixed service	의장 M. Murotani 부의장 G. F. Hurt V. M. Minkin	Japan United States Russia
SG10 Broadcasting service-sound	의장 A. Magenta H. M. Joshi O. Karpenko H. Kussmann L. Oison	Italy India Ukraine Germany United States
SG11 Broadcasting service-television	의장 M. Krivocheev 부의장 T. Nishizawa R. Zeitoun	Russia Japan Canada
Coordination Committee for Vocabulary (CCV)	의장 J. Schwob 부의장 L. W. Barclay P. Garcia-Barquero	France United Kingdom Spain

12) ITU-R과 ITU-T간 연구과제 이관문제는 금번 RA기간 중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가 되었으나 각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을 뿐 이와 관련한 기본 인식의 차이로 인해 추가 연구과제 이관에 대한 어떠한 합의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의 재연을 방지하고 양 분야간 협력과 조화를 위한 문제해결을 모색코자 본 의견이 제안, 채택되었으나 실제로 '98.1월 개최된 RAG와 TSAG 공동회의에서는 양자 공동의 구체적인 준비부족으로 인해 본 사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사. 기타 주요사항

1) ITU-R 전략계획 보고 (1999 - 2003)

- 주요 내용

- ITU 전략계획(1999-2003)의 일부로 전파통신부문(IITU-R) 전략계획 기술, Objective, Priorities 등 포함¹³⁾

- 향후 계획

- '98. 1월 RAG 회의, 2월 이사회 Strategic Planning Group 회의에서 추가 검토
- '98 이사회 검토 후 '98. 10월 전권위원회에 상정, 채택

2) WRC 회의 간격 논의

- 논의 배경

- 현행의 WRC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나 차기 WRC의 경우 의제가 과다한데 비해 준비시간이 충분치 못함
- 과거에도 상기 이유로 인해 중요 사안을 다음 회의(Conference)로 이관하는 경우 발생함

- 결정사항

13) ITU-R 전략계획(1999-2003) 중 역점 추진사항(priorities)은 다음과 같음.

- 우주와 지상 환경에서의 신규 및 기존 시스템간의 적시 조정(coordination) 촉진과 주파수 할당과 위성궤도 사용의 보다 나은 조화를 위한 주파수 규칙에 대한 이니셔티브
- 주파수 배정의 조정(coordinating)과 등록(registering), 전파규칙 적용에 있어 정부회원에 대한 지원 확대 (특히 개도국에 대해 배려)
- 향상된 국제 주파수 관리기술의 연구 및 적용
- ITU 개발국(BDT)에 대해 개도국에 현대식 무선시스템 도입 - 특히 농촌지역, 정부회원에 대한 지원 등의 제반 활동 지원
- GMPCS, IMT-2000를 포함한 글로벌 개인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키 위한 권고 개발
- 권고의 가속화된 개발, 주파수 배정작업에서의 정보기술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해 작업방법의 개선 추진
- ITU-R 활동에 정부회원, 민간회원, 기타 기구의 참여 확대 촉진

14) WRC-97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98 ITU 이사회와 전권위원회에 다음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음 (결의 CTPLN1-2)

- '98 이사회는 사무국(BR) 등으로부터의 정보와 부문 자문그룹(Advisory Bodies)의 견해에 바탕, WRC 개최 간격 확대의 타당성과 관련 한 명확한 방침을 '98 ITU 전권위원회에 권고하기 위한 분석작업을 행한다
- '98 전권위원회는 (상기 관련) 적절한 전략을 결정하고 ITU 현장, 협약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한다
- 더불어 '98 전권위원회는 미래에 단일 또는 제한된 주제를 다룬 conference를 개최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고려한다

15) '98.1월 개최한 RAG 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WRC를 위한 별도 준비회의(CPM) 운영, 서신을 통한 작업수행 증대, RAG 역할 증대의 타당성에 따라 RA의 WRC와 연계개최 및 매2년 주기 개최 타당성 감소
- RA의 별도 개최시 2차 CPM회의와 연계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 RA의 개최주기에 관해서는 매 4년마다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다수가 지지 표명

16) '98.1월 TSAG/RAG 공동회의시 ITU-T 국장 (Mr. Irmer)이 발표한 IPR Policy에 대한 검토작업 진행경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권고 개발시 지적재산권 처리문제에 대한 기존의 TSB 지적재산권 지침을 ITU 지적재산권 지침으로 개정키로 하고, 본문내용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
- 지침적용시 세부사항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작성, 수록
- 지적재산권 보유를 주장하는자가 이의 허여를 거부할시 이의 처리방안 등 당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coordination group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 실시

- WRC-97에 상기사항 제안, 최종 검토토록 함¹⁴⁾

- 동시에 현재 WRC와 연계하여 매 2년마다 WRC에 앞서 개최하는 전파통신총회(RA)의 개최주기도 추후 검토가 필요함¹⁵⁾

3) ITU-R IPR Policy 방향 설정

- ITU-R 별도의 지적재산권 지침 마련을 지양하고 ITU-T내의 관련 지침 그룹에 참여, ITU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향후 노력키로 함
- ITU-T의 지적재산권 지침(IITU-T Patent Policy)에 관한 Correspondence Group은 ITU-T 국장인 Mr. Irmer가 주도하고 있으며, '98.1월 TSAG/RAG 공동회의시 진행 경과에 대해 발표키로 함

4) 합법적 도청(legal interception) 문제 논의

- 배경
 - '97 이사회에서 결의 1115 채택을 통해 ITU-R, ITU-T에 본 주제에 관한 연구과

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도록 요청¹⁷⁾

- 결정사항

- 사무국(BR) 국장에게 ITU-R 모든 연구반이 상기 이사회 결의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 줄것을 요청
- BR 및 TSB(ITU-T 사무국) 국장에게 '98.1월 개최되는 RAG/TSAG 공동회의와 '98 전권위원회에 본 사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¹⁸⁾

5) wireless access 용어 및 정의

- RAG내의 wireless access 용어에 관한 임시 그룹에서 작업진행 및 특정 용어, 정의에 대해 합의 도출(관련 Doc.: DOC RA97 /PLEN/22)
- WP 8A, 8B간 Joint Rapporteur Group(SG 8)에서 추가 연구를 진행토록 관련 내용을 송부키로 함. 

17) 본 결의의 채택배경은 다음과 같음.

- ITU의 회원국 중 많은 나라가 특정한 상황하에서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도청을 법 집행 및 보안당국에 허용하고 있음.
- 이들 당국은 합법적 도청을 위한 요구조건 항목(the international requirement for interception)에 대해 이미 합의.
- (전기통신 시스템의) 초기 설계단계에서 이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합법적 도청을 위한 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를 보다 효과적인 전기통신 기반구조의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음.

18) '98.1월 개최된 TSAG/RAG 공동 회의에는 본 사안이 상정, 검토되지 못했음.